

사회복지학과 학사학위 규정

2022. 10. 17. 제정.

2024. 3. 6. 개정.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강릉원주대학교 학칙 제85조(졸업 및 학위), 학사운영규정 제89조(졸업 및 학위취득 요건)에 따른 보건복지대학 사회복지학과(이하 '사회복지학과'라 한다)의 졸업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졸업요건)

① 2019. 3. 1.부터 사회복지학과로 입학한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사회복지학과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
2. 전 수강과목의 평점 평균이 2.0 이상
3. 졸업시험 합격
4. 공인어학성적표 또는 자원봉사시간 합계 120시간 이상의 이수증명서

② 2019. 2. 28.까지 사회복지학과로 입학한 학생은 제1항의 제4호의 공인어학성적표 또는 자원봉사시간 합계 200시간 이상의 이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인어학성적 이수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공인어학성적표는 졸업일 기준 유효한 성적이어야 한다.

영역	이수기준
영어	1) TOEIC 550점 이상 2) TOEFL(CBT 137점 이상, PBT 457점 이상, IBT 47점 이상) 3) TEPS 440점 이상 4) TOEIC-SPEAKING: 110점 이상 5) OPic: IM1 등급 이상 6) NEW TEPS: 235점 이상
중국어	HSK(한어수평고시) 4급 이상
일본어	1) 일본어능력시험(JLPT) N3급 이상 2) JPT 450점 이상

④ 2019. 3. 1.부터 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로 편입한 학생은 제1항 제4호의 공인어학성적표 또는 당해 학생이 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편입한 당해 학기부터 학기당 15시간으로 계산한 자원봉사시간 이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019. 2. 28.까지 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로 편입한 학생은 본문의 자원봉사시간을 학기당 25시간으로 계산한다.

⑤ 사회복지학과로 전과한 학생은 사회복지학과로 전과하기 이전에 다른 학과에 입학한 일시를 기준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졸업요건을 적용한다.

⑥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4항, 제5항에서 정한 자원봉사시간은 재난, 재해, 비상사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과 회의를 통해 당해 학기 또는 학년에 한하여 단축될 수 있다.

제3조(졸업시험)

①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졸업시험은 학과 회의를 통해 정한 사회복지학 과목 중에서 출제한다.

② 제1항의 졸업시험에 출제된 과목 총점의 평균이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및 각 과목 100점 만점 중 4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강릉원주대학교 학칙과 강릉원주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학생들에게 공지하는 등 상당한 방법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